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 학 기 술 관 계 장 관 회 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심층 토론’ 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성 제고

나. ‘현안장관회의’ 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 중심 운영 시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심의를”을 “심의 및 토론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안장관회의의 운영 등) ① 의장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주요 쟁점의 심층 토론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 장관회의(이하 “현안장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현안장관회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직접 관련된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현안장관회의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차기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u>심의를</u> 위하여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 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u><신 설></u>	제6조(의견 청취) ----- ----- <u>심의 및 토론을</u> ----- ----- ----- ----- -----. <u>제7조의2(현안장관회의의 운영</u> <u>등) ① 의장은 과학기술 및 인</u> <u>공지능 정책에 관한 주요 쟁점</u> <u>의 심층 토론을 위하여 과학기</u> <u>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이하</u> <u>“현안장관회의”라 한다)를 개최</u> <u>할 수 있다.</u> <u>② 현안장관회의는 제7조제1항</u> <u>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직접 관</u> <u>련된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할</u> <u>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의 및 의</u> <u>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아니한</u> <u>다.</u> <u>③ 현안장관회의에서 협의·조정</u> <u>된 사항은 차기 관계장관회의에</u> <u>보고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6482